

세무총국의 기업합병(분할) 적용 특수세무처리 규정 추가 구체화

2026.07

Issue 6

개요

최근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재편 업무 소득세 처리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2026 년 제 13 호, 이하 “13 호 공고”) 및 공식 해설¹을 발표했습니다. 13 호 공고는 재세[2009]59 호(이하 “59 호 문건”) 및 보충 문건에 기초하여, 거주자기업 합병(분할)에 적용하는 특수세무처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3 호 공고 및 해설은 주로 아래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 피합병(피분할) 기업의 거주자기업 주주 중 특수세무처리 적용에 동의한 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어야 하며, 그중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인 거주자기업 주주 및 Top 10 거주자기업 주주는 모두 특수세무처리 적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 주주 입장에서는 동의한 거주자기업 주주만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피분할) 회사 입장에서는 동의한 거주자기업 주주의 지분에 해당되는 자산/부채 부분만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일반세무처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주주는 재편 후 12 개월 이내에는 취득한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자연인 주주, 비거주자기업 주주, 파트너십기업 주주, 계약형 자산관리상품 주주는 모두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13 호 공고는 재편일이 2026 년 1 월 1 일 이후의 기업 재편 업무에 적용됩니다. 이번 Newsflash 에서는 13 호 공고 및 해설(해설에서의 사례 포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PwC 의 관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一、피합병(피분할) 기업의 거주자기업 주주가 합산 지분율 50% 초과하여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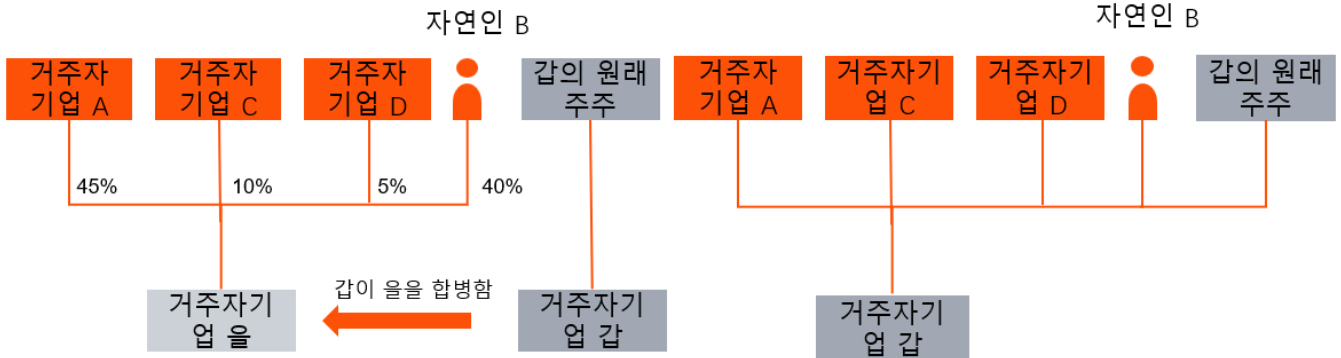
13 호 공고 제 1 조는 기업 합병(분할)에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요건 중 하나로 합산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피합병(피분할) 기업의 거주자기업 주주가 특수세무처리 적용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례 1²: 기업 갑이 기업 을을 흡수합병한다고 가정합니다. 기업 을에 총 주주 4 명이 있고, 주주 유형과 지분율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A 는 거주자기업이며, 지분율은 45%입니다. 주주 B 는 자연인이며, 지분율은 40%입니다. 주주 C 는 거주자기업이며, 지분율은 10%입니다. 주주 D 는 거주자기업이며, 지분율은 5%입니다.

주주 A, C, D 는 피합병기업 및 합병기업과 특수세무처리에 합의합니다. 기타 특수세무처리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해당 재편은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합병 전

합병 후



13 호 공고 제 1 조 제 1 항

기업 합병, 분할 업무와 관련하여, 합산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피합병(피분할) 기업의 거주자기업 주주와 피합병(피분할) 기업, 합병(분할) 기업이 특수세무처리 적용에 합의한 경우, 합의한 주주 보유 지분 및 지분에 해당되는 피합병(피분할) 기업이 양도하는 자산·부채, 합병(분할) 기업이 취득하는 자산·부채는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 나머지 주주가 보유하는 지분 및 지분에 해당되는 피합병(피분할) 기업이 양도하는 자산·부채, 합병(분할) 기업이 취득하는 자산·부채는 모두 일반세무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13 호 공고 제 2 조 제 1 항

제 1 조 규정에 따라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재편일 기준 피합병(피분할) 기업 지분율이 5% 이상 보유하는 거주자기업 주주, Top 10 거주자기업 주주는 모두 특수세무처리 적용에 합의해야 한다.

분석: 주주 A, C, D 가 피합병기업 및 합병기업과 특수세무처리 적용에 합의하였으므로, 합의에 도달한 거주자기업 주주의 합산 지분율은 60%이며, 이는 합산 지분율 50% 초과라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다른 정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기업 주주인 A, C, D 는 특수세무처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인 주주 B 는 개인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PwC의 관찰

13 호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는, 국가세무총국 공고[2010]4 호에 따라, 동일 재편 업무의 거주자기업 각 당사자는 일관된 세무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즉 모두 일반세무처리를 적용하거나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공고[2015]48 호 별첨 《기업재편 기업소득세 특수세무처리 신고자료 일람표》에서는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재편 당사자 각 측이 일관되게 특수세무처리를 선택하고 각 당사자의 법인 인감(공장)을 날인한 증명 자료”가 포함되도록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3 호 공고는 합병(분할) 업무에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때의 “일관성” 규칙을 최적화했습니다. 피합병(피분할) 기업의 거주자기업 주주는 합산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합의하면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50%의 기준을 계산할 때, 지분율이 5% 이상인 거주자기업 주주와 Top 10 거주자기업 주주는 반드시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타 소액 거주자기업 주주는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데 합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액 거주자기업 주주가 합의를 선택하지 않거나, 합병(분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합의에 참여한 증명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소액 주주는 일반세무처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二、주주 입장에서는, 합의에 도달한 거주자기업 주주만 특수세무처리 적용 가능. 자회사 입장에서는, 합의에 도달한 거주자기업 주주 지분 해당 자산·부채 부분만 특수세무처리 적용 가능, 나머지 부분은 일반세무처리 적용.

사례 1(계속): 재편 시, 기업 을의 자산과 부채의 과세기초(세무상 장부가액)는 1000 만 위안이며, 공정가치는 1800 만 위안입니다. 재편의 각 당사자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13 호 공고 제 1 조 제 1 항

...합의에 도달한 주주가 보유하는 지분과 지분에 해당하는 피합병(피분할) 기업이 양도한 자산·부채, 합병(분할) 기업이 취득한 자산·부채는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주주가 보유하는 지분과 지분에 해당하는 피합병(피분할) 기업이 양도한 자산·부채, 합병(분할) 기업이 취득한 자산·부채는 모두 일반세무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13 호 공고 제 1 조 제 2 항

합병(분할) 기업이 전항 취득한 자산·부채에 따라 일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부채의 원래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따라 세무상 취득가액을 확정할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공정가치와 원래의 세무가액 간 차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하여 재편일 소속연도로부터 10 년간 균등하게 세전 상각·공제한다. 이 방법이 선택되면 변경 불가하다.

분석:

- 주주 입장: 거주자기업 주주 A, C, D 는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며, 지분 양도소득을 잠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연인 주주 B 는 현행 개인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자회사 입장(60%는 특수세무처리 적용, 40%는 일반세무처리 적용):

- 피합병기업 을의 양도 자산·부채의 60%는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고, 당기에 잠정적으로 소득을 인식하지 않으며, 나머지 40%는 기업 을의 입장에서 양도차익 320 만 위안[(1800 - 1000) × 40%]을 인식해야 합니다.
- 합병기업 갑이 취득한 기업 을의 자산·부채의 60% 부분의 세무가액은 600 만 위안(1000×60%)이고, 나머지 40% 부분의 세무가액은 720 만 위안(1800×40%)이며, 합계 1320 만 위안입니다. 개별 자산과 관련하여 기업은 다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개별항목과세방식: 개별 자산·부채는 각각 “원래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60% + 공정가치의 40%”를 기준으로 세무상 취득가액을 확정합니다. 또는
 - ✓ 간편과세방식: 개별 자산은 원래의 세무상 장부가액(즉 합계 1000)에 따라 인식하며, 일반세무처리 적용 부분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세무상 장부가액 간 차액 320 만 위안(720-400)에 대해서는 하나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재편일 소속 연도로부터 10 년간 균등하게 상각하고 세전 공제합니다.

PwC 의 관찰

13 호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는, 기업 합병과 분할에 자연인 주주의 존재가 허용되었으며, 자연인 주주는 특수세무처리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주주 입장에서의 처리 방식은 13 호 공고와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피합병(피분할) 자회사 입장에서의 자산·부채 평가증 부분에 대한 기업소득세 처리에 대해서는 문건 규정상 명확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실무에서는 기업 을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양도차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기업 갑이 기업 을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전액 기업 을의 원래의 세무상 장부가액(즉 1000 만 위안)에 따라 확정하였습니다. 13 호 공고에 따르면, 일부 주주가 일반세무처리를 적용할 경우 피합병(피분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소득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3 호 공고에 따라 기업 을이 일부 양도차익을 인식하게 되면, 기업 갑이 취득한 자산·부채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이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개별항목과세방식을 선택할 경우, 해당 세무상 취득가액은 자산 유형에 따라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통하거나 기업 갑이 추후 자산을 처분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과세방식을 선택할 경우, 하나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향후 10 년간 상각·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피합병(피분할) 자산의 유형을 검토하고 납세준수비용을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三、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주주는 재편 이후 12 개월 이내에는 취득한 지분을 양도할 수 없음

13 호 공고 제 2 조는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주주가 재편 이후 12 개월 이내에는 취득한 지분을 양도할 수 없는 2 가지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1. 경우 1: Top 10 거주자기업 주주 및 지분율이 5% 이상인 거주자기업 주주

사례 2³: 기업 갑은 상장회사이며 기업 을을 흡수합병할 예정입니다. 기업 을의 거주자기업 주주들이 모두 합의에 도달했고, 합의에 도달한 거주자기업 주주의 합계 지분율은 86%입니다. 자연인 주주와 파트너십기업 주주는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합계 지분율은 14%입니다. 재편일에 기업 을의 자산·부채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1000 만 위안이며, 공정가치는 2000 만 위안입니다. 재편 완료 후 9 개월차에 그 중 하나의 거주자기업 주주(지분율 6%)가 보유한 상장회사 갑의 주식을 양도합니다. 이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13 호 공고 제 2 조 제 1 항

제 1 조 규정에 따라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재편일에 피합병(피분할) 기업의 보유 지분 비율이 5% 이상인 거주자기업 주주와 Top 10 거주자기업 주주는 모두 특수세무처리 적용에 합의해야 하고, 재편 후 연속해서 12 개월 동안은 취득한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주주가 재편 이후 12 개월 이내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특수세무처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미 특수세무처리를 진행한 경우, 각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분석:

- 재편 시, 거주자기업 주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기업 을은 소득 140 만 위안 $[(2000 - 1000) \times 14\%]$ 을 인식하며, 합병기업 갑은 1140 만 위안 $(1000 \times 86\% + 2000 \times 14\%)$ 으로 자산·부채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확정합니다. 거주자기업 주주는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며, 당기에는 잠정적으로 소득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연인 주주와 파트너십기업 주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을 인식합니다.
- 재편 후 9 개월차에, 지분율 5% 이상인 한 거주자기업 주주가 취득했던 상장회사 갑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각 당사자는 모두 일반세무처리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피합병기업 을은 소득 860 만

위안(2000 - 1000 - 140)을 추가로 인식하고, 합병기업 값은 2000 만 위안으로 세무상 취득가액을 다시 확정하며, 모든 거주자기업 주주는 소득을 재인식합니다.

PwC의 관찰

59 호 문건에 따르면,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요건 중 하나는 “기업 재편에서 지분대가를 취득한 기존 주요 주주는 재편 후 연속 12 개월 내에 취득한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세무총국공고[2010]4 호에서는 “기존 주요 주주란 기존 양도대상기업 또는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는 것을 추가 규정했습니다. 13 호 공고는 이 규정을 보다 엄격히 했습니다: 지분율 5% 이상인 거주자기업 주주 및 Top 10 거주자기업 주주는 모두 재편 이후 연속 12 개월 동안 취득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일반세무처리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합병기업 을은 소득 860 만 위안을 추가로 인식해야 하나, 실무에서는 기업 을이 합병 이후 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존속기업(위 사례에서는 기업 갑)이 해당 소득을 인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합병기업 값은 2000 만 위안으로 자산·부채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다시 인식합니다.
- 주주 입장에서는 소득을 인식합니다. 59 호 문건의 기업합병 일반세무처리에 따라 거주자기업 주주는 청산에 따른 기업소득세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경우 2: Top 10 거주자기업 주주에 속하지 않으며 비율이 5% 미만인 기타 주주

사례 3⁴: 2026 년 7 월, 기업 갑은 기업 을을 흡수합병했으며, 합의에 도달한 거주자기업 주주의 지분율은 51%입니다. 주주 A 는 거주자기업으로서 Top 10 거주자기업 주주에 속하지 않고 기업 을의 4% 지분을 보유하며 기타 각 당사자와 합의하여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합니다. 합병 재편 이후, 주주 A 는 기업 갑의 지분 2%를 취득하게 됩니다. 2026 년 12 월, 주주 A 가 기업 갑의 1% 지분을 양도할 경우 특수세무처리 적용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13 호 공고 제 2 조 제 2 항

앞서 언급된 주주를 제외하고, 합의에 도달한 기타 주주가 재편 이후 12 개월 이내에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인해 합의된 합계 지분율이 더이상 50%를 초과하지 않게 되면,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없다. 각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분석: 주주 A 가 기업 갑의 1% 지분을 양도하면 해당 기업 을의 2% 지분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합의에 도달한 비율이 49%로 감소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합병은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각 당사자는 모두 일반세무처리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합니다.

PwC의 관찰

공식 해설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제공한 설명에 따르면, Top 10 거주자기업 주주와 지분율 5% 이상 주주가 합의한 합계 지분율이 50%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비록 주주 A는 Top 10 거주자기업 주주에 속하지 않고 지분율도 5%보다 낮지만, 그 지분율을 계산상 포함시켜 합의에 도달한 거주자기업 주주의 합계 지분율이 51%에 도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 A가 향후 12개월 이내에 갑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수세무처리 적용 요건을 위반한 것이며, 각 당사자는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없고 규정에 따라 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고 해설에서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Top 10 거주자기업 주주 및 지분율 5% 이상인 주주가 합의한 합계 지분율이 이미 50%를 초과했고, 주주 A의 4% 지분율은 50% 기준 판정 시 포함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주주 A가 재판일에 특수세무처리에 합의할 것을 선택했으나, 재판 이후 12개월 이내에 갑 회사의 1% 지분(기업 율의 2% 지분에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공고 및 해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후속 세무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관할 세무국과 소통할 것을 권장).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 주주 입장: 합의에 도달한 합계 지분율이 여전히 50% 기준을 초과하므로, 이론상으로는 합의에 도달한 다른 거주자기업 주주들이 특수세무처리를 계속 적용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주주 A가 12개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일 기준 일반세무처리 방식으로 조정하여 소득을 인식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분 양도 비율(주주 A가 지분의 절반만 양도한 경우)에 따라 소득을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소득을 인식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 피합병기업 율의 입장: 기업 율이 해당 4%(또는 2%)의 자산·부채 평가증에 대해 소득을 추가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기업 갑의 경우 이에 따른 세무상 취득가액 조정).

四、중국 거주자기업이 아닌 주주는 특수세무처리 미적용

13 호 공고 제 3 조

합병에서의 피합병기업 주주와 분할에서의 피분할기업 주주는 자연인, 파트너십기업, 계약형 자산관리상품, 비거주자기업일 수 있습니다. 상술한 주주는 현행 규정에 따라 소득세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PwC의 관찰

국가세무총국 공고[2015]48 호에서는 자연인 주주가 개인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해야 할 것, 즉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13 호 공고는 이를 기반으로 자연인 주주, 비거주자기업 주주, 파트너십기업 주주, 계약형 자산관리상품이 모두 현행 규정에 따라 소득세 처리를 해야 할 것, 즉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없음을 추가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주의사항

최근 몇 년간 상장회사의 흡수합병 등 재편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상장회사의 주주가 많아 모든 거주자기업 주주가 이전 규정에 따라 특수세무처리에 완전히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3 호 공고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업 합병(분할)의 각 당사자가 더 이상 100% 합의하여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합의에 도달한 거주자기업 주주의 합계 지분율이 50% 기준을 초과하고, 특수세무처리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의에 도달한 거주자기업 주주 및 그 자회사 입장에서 합의된 지분의 대응 비율에 따라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3 호 공고는 특수세무처리와 일반세무처리를 병행하는 “이중 체계”를 제공하므로, 기업이 해당 문건을 적용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주주 입장: 핵심 대주주(지분율 5% 초과, Top 10 주주)에 대해 엄격한 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재편 후 12 개월 이내에 취득 지분을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 모두 다시 조정하고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기타 거주자기업 소액주주의 후속 양도에 대해서도 동적으로 추적하여, 재편 후 12 개월 이내의 소액 지분 양도가 50%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자회사 입장에서 미치는 세무 영향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자회사 입장: 특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주주와 일반세무처리를 적용하는 주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재편 후 합병법인(또는 분할법인)이 취득한 자산·부채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공정가치와 원래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재무부문은 대장을 작성하여 각각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래 특수세무처리를 적용받던 주주가 재편 후 12 개월 이내에 취득 지분을 양도할 경우 자회사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영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PwC 는 기업 재편 관련 재세 정책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적시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주석

1. 《기업 재편 업무 소득세 처리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6 년 제 13 호)

본문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랍니다:

<http://beijing.chinatax.gov.cn/bjswj/sszc/zxwj/202607/c0aca7983ba2433bb92c6bfa43f313a1.shtml>

공식 해설은 다음을 참조 바랍니다:

<http://beijing.chinatax.gov.cn/bjswj/sszc/zcjd/202607/3cbd6c5cfa2d445bbfac6d7402170c9d.shtml>

2. 본문 사례 1 은 13 호 공고 공식 해설에서의 사례 1, 사례 2 및 사례 3 을 결합했습니다.
3. 본문 사례 2 는 13 호 공고 공식 해설에서의 사례 4 및 사례 5 를 결합했습니다.
4. 본문 사례 3 는 13 호 공고 공식 해설에서의 사례 6 입니다.

CONTACT LIST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Newsflash(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6 年 7 月 27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2026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